

의안번호	2215276
의 퇴 인	전용기의원
회 답 일	2026. 2. 10.
추 계 번호	25D695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,100만원, 2030년 3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6,200만원(연평균 3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 (안 제8조의10 신설)	31	32	32	33	34	162	32

주: 1.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(안 제8조의10 신설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2.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를 위하여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10(여론조사기관·단체의 등록 등)	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고, 이를 위하여 조사시스템, 분석전문인력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등급결정 권한을 전문연구·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10(여론조사 기관·단체의 등록 등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연 1회 정책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정
 - 선거여론조사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도 대통령 지지율, 정당 선호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등급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 기준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0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사시스템, 분석전문인력, 운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, 등급결정 등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조사와 등급결정을 위하여 연 1회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연구용역으로 2026년 기준 3,100만원 예산 편성
 - 유사사례를 활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,100만원, 2030년 3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6,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	31	32	32	33	34	162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급 부여를 위하여 매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